

사천시벌리사회복지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181
----------	-----

제출일자 : 95. 11.

제 출 자 : 사 천 시 장

1. 제안이유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사회복지관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회복지관 운영의 적정한 내실을 기하고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함.

2. 법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 사회복지관운영규정

3. 주요골자

- 가. 복지관 명칭은 "사천시벌리사회복지관", 위치는 "사천시 벌리·향촌토지구획정리지구 4블록1롯트 벌리주공영구임대아파트 단지안에 둔다(안 제3조)
- 나. 지역내 저소득 주민의 자립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탁아소 운영, 목욕탕 운영 기타 사회복지를 위한 사업의 복지관 운영 내용을 정함(안 제4조).
- 다. 사천시내에 소재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우선하여 운영 위탁함(안 제5조)
- 라. 위탁·수탁 협약 및 수탁자의 의무 사항 정함(안 제6조, 제8조).
- 마. 시장의 위탁 취소 및 지도·감독 사항 정함(안 제9조, 제10조).

4. 제정 조례안 따로 붙임

사천시별리사회복지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별리사회복지관 (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시설의 설치 및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탁"이라 함은 시장이 복지관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의뢰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2. "수탁"이라 함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시장으로 부터 복지관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함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복지관의 명칭은 "사천시별리사회복지관"이라 하고 사천시 별리향촌토지구획정리지구 4보락 1롯트 별리주공영구임대주택단지안에 둔다.

제4조(복지관의 운영 내용) 복지관은 다음 각호와 같은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1. 지역내 저소득 주민의 자립을 위한 상담 및 교육
2. 탁아소 운영(단 사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을 이전 운영하는 것으로 한다)
3. 취업 알선
4. 목욕탕 운영
5. 기타 사회복지를 위한 사업

제5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복지관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고, 위탁할 경우 사천시내에 소재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우선한다.

1. 운영 능력이 있는 자
2. 사업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자
3. 과거 이와 비슷한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
4. 기타 시장이 운영상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위탁·수탁 협약)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위탁·수탁은 시장과 수탁자 상호 간에 위탁·수탁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비 보조) 시장은 사회복지관운영규정에 의거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복지관 시설의 운영으로 관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복지관 운영 비용을 보조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상실할 때
2. 수탁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 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위탁·수탁 협약 사항을 위반 하였을 때
4.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5. 복지관의 운영 목적에 위배된 때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지도·감독) ①시장은 필요시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관계 법령 및 사회법인 지도·감독 요강등에 의거 사회복지관 시설의 운영상황을 지도·감독하게 하고,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시 관계 공무원의 지도·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관련 법령·시행규칙
및 보건복지부 훈령등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